

충청북도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# 충청북도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7월 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고
- 장애등급제 폐지(7.1.)에 따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자 용어를 개정하는 것과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위반소지가 있는 동 조례안 제12조(면책)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명예도민 수여자 주차요금 감면규정 마련(안 제5조제1항제8호)
-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(안 제5조제3항제1호나목)
- 손해배상 등의 책임 규정 개정(안 제11조제2항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과 명예도민 수여자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- 또한 이용자 차량 파손 등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의·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지고, 그 밖의 손해는 「민법」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는 것임.
-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, 면책규정 신설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, 배상책임에 대하여 조례에 면책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